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을 폐지〉

■ 정 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35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 부담금 정비 관련 발의 현황	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9.
3. 회부연월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징수하는 분담금의 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략)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u>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u>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 11. (생략) ② (생략)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사용료·수수료·지방세</u> ---- ----- --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u>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	<삭제>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u>사용료 또는 수수료</u> ----- ----- -. ----- -----

현행	개정안
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	----- ----- ----- ----- ----- ----- ----- -----. ② ----- -- <u>사용료 또는 수수료</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u>사용료 또는 수수료</u>는 ----- -----. ② <u>사용료 또는 수수료</u>----- ----- ----- -----

현행	개정안
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u>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용료 또는 수수료</u>-----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u>사용료 또는 수수료를</u> ----- ----- <u>사용료 또는 수수료를</u> ----- ----- -----.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용료 또는 수수료를</u>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분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며, 부담금¹⁾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반대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²⁾.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정부는 ‘재정현안 관계 차관 간담회(’24.1.26.)’, ‘민간 합동 부담금 혁신 TF(’24.1.31.)’를 통해 실적·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등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 경감효과가 예상됨.

<정비대상 부담금 선정 기준>

□ (정비기준) 「부담금관리법」 상 부담금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

*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2002헌가2, 2003.12.18.)

○ (폐지 기준) 부담금 정의 未부합,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

○ (감면 기준) 부과요율·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

-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한 경우
- 부담금 수입 일부를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
-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비제외, 55개) ① 국민건강·환경보전 등 긍정적 외부효과, ② 금융기관 출연금, ③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자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 참고로, 현재 총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중이며, 그 규모는 22.4조원 수준임.

2024년 7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2020년 1건(2.5억원)을 징수한 이후 부과·징수 실적은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부과·징수 실적 없이 사실상 미운영 상태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함으로써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³⁾.

다만, 분담금의 운영실적이 미비하다고 하여, 분담금의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향후의 부과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는 대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5개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수용하였다는 입장임.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운영현황>

지자체	조례명	운영현황	지자체 의견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 (운영실적) '20.1월 부과·징수(2.5억)* 후 부과·징수 실적 없음 * 노원구 '상계9단지 아파트 푸른길 조성사업' 입주자 대표회의에 분담금 2억 5천만원을 부과	수용

3)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72호를 삭제하는 일부개정 법률안도 제출된 상황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7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지자체	조례명	운영현황	지자체 의견
강원 원주시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 (운영실적) 부과·징수 실적 없음 ⇒ 관리운영비 성격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가 경비 처리	수용
강원 태백시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 (운영실적) 부과·징수 실적 없음 ⇒ 관리운영비 성격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가 경비 처리	수용
전남 장흥군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 (운영실적) 부과·징수 실적 없음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수용
경북 김천시	김천시 치수사업비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 (운영실적) 부과·징수 실적 없음 ⇒ 하천, 공유수면 및 소하천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비용 부담 또는 지원 가능	수용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 22대 국회 부담금 정비 관련 발의 현황

	부담금명	근거법률
1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2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관광진흥법」 제64조
3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광업법」 제87조
4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
5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의 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
6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7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8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9	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 시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91조
10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
11	물류단지 내 존치시설 소유자의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12	산업단지 내 존치시설 소유자의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13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14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5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1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17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18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9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0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운법」 제22조의2
21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2024. 10. 22. 삭제됨